

특허 진보성 판단 등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구조 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1. 목적

이 기준서는 특허출원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및 청구항 해석에 관하여, 특허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 기준을 정리하고, 그 기준을 실제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가 필요한 이유와 조건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 사이에 일부 유사한 용어, 기능 또는 기술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먼저 청구항 발명을 정확히 확정하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그 후 그 차이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단순한 감각적 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청구항, 명세서, 도면, 선행기술, 기술분야, 통상의 기술자 수준, 차이 구성, 결합 동기, 작용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적 판단이다. 따라서 진보성 판단에는 복수 자료의 분류, 구성요소별 대비, 누락 탐지, 모순 검토, 오류통제 및 검증 로그 작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구조적 판단은 인공지능 기반 평가에 적합하다. 인공지능은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선행기술의 내용을 문헌 전체 기준으로 정리하며,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여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 평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법률판단을 대

체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 평가는 최종 판단의 전제가 되는 청구항 분석,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특정 및 판단 오류 점검을 구조화하여, 판단기관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평가방식이다.

2. 관련 법령과 인공지능 기반 평가의 필요성

2.1 특허법 제29조 제1항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위 규정은 신규성 및 선행기술 판단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진보성 판단에 앞서 선행기술이 무엇인지, 그 선행기술이 어느 범위까지 기술내용을 개시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유용하다. 인공지능은 다수의 선행문헌을 단순 키워드가 아니라 기술적 과제, 구성, 작용효과 및 기술적 맥락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선행문헌의 일부 문구만을 분리하여 과도하게 확장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헌 전체 기준의 요약과 구성요소별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

2.2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다.

따라서 진보성의 법률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원 전에 공개된 선행기술을 기초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가.”

이 기준은 “비슷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가”라는 단순 비교가 아니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의 구체적 차이점을 먼저 특정한 뒤, 그 차이점을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쉽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이 법률상 기준을 실제 판단 절차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즉, 인공지능은 청구항 발명을 구성 요소별로 확정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추출하며, 그 차이 구성에 대한 개시·시사 여부, 결합 동기, 작용 효과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단계별로 평가할 수 있다.

3.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기준과 인공지능 평가

3.1 선행기술, 차이점, 통상의 기술자 수준의 확정

대법원 판례는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 수준을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관 또는 판단자는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을 막연히 비교하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선행기술의 구체적 내용과 청구항 발명의 구체적 차이점을 먼저 확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례 기준은 인공지능 기반 평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위 판단은 단일 결론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순차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청구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야 한다.

둘째, 선행기술의 내용을 문헌 전체 기준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셋째,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구성 요소별로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그 차이점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 과정을 표준화된 항목으로 수행할 수 있고, 판단 과정에서 누락된 구성요소나 불명확한 대비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평가는 진보성 판단의 기초자료를 객관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3.2 사후적 고찰 금지

진보성 판단에서는 출원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출원 발명을 이미 알고 난 뒤 선행기술들을 조합하면 대부분의 발명은 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판단은 “출원 발명을 알고 난 뒤의 판단”이 아니라,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만을 보고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이 사후적 고찰 금지 원칙을 점검하는 데 적합하다. 인공지능은 평가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첫째, 차이 구성이 선행기술에 실제로 개시되어 있는지.

둘째, 차이 구성을 채택할 암시 또는 동기가 선행기술 자체에 존재하는지.
셋째,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이 출원 발명을 알고 난 뒤의 끼워서 맞추기인지.
넷째, 결합 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공 기대가 출원 당시 존재하였는지.
다섯째, 차이 구성의 효과가 출원 당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따라서 인공지능 평가는 단순히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고찰이 개입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점검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3.3 선행문헌 전체 기준

선행문헌을 근거로 진보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행문헌의 일부 표현, 요약, 초록, 도면 일부만을 분리하여 출원 발명과 역지로 대응시켜서는 안 된다. 선행기술은 문헌 전체의 기술적 과제, 구성, 작용 효과 및 기술적 맥락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선행문헌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문헌이 해결하려는 과제, 핵심 구성, 작동 방식, 효과 및 한계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선행문헌의 일부 문구를 과도하게 확장하거나, 출원 발명에 맞추어 선행기술을 재구성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4. 청구항 해석에 관한 법령 및 판례 기준과 인공지능 평가

4.1 특허법 제97조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발명 역시 원칙적으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청구항 문언을 구성요소별로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가 가지는 기능, 배치, 연결관계, 작용순서 및 기술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청구항 발명의 확정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4.2 청구범위의 객관적·합리적 해석

청구범위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청구항 문언, 명세서, 도면의 대응관계를 분석하여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동시에 명세서나 도면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위험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4.3 청구항의 상위개념화 금지

청구항에 특정 구조, 특정 배치, 특정 처리단계, 특정 작용관계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선행기술에 맞추기 위하여 더 넓은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특정 광학 경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광학 수단”으로 일반화하거나, 특정 센서 배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센서 구조”로 일반화하거나, 특정 데이터 처리 순서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영상 처리”로 일반화하는 것은 청구항의 구체적 차이 구성을 지워버릴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이러한 상위개념화 오류를 점검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청구항의 구체적 문언과 선행기술의 대응 구성을 나란히 대비하고, 판단자가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더 넓은 개념으로 바꾸어 대비하고 있는지 표시할 수 있다.

5. 진보성 판단의 표준 절차와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

위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진보성 판단은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절차는 인공지능 기반 구조평가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5.1 제1단계: 청구항 발명의 확정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요소별로 확정한다. 이때 각 구성요소의 문언뿐만 아니라, 그 구성요소의 기능, 배치, 연결관계, 작용순서, 처리 대상 및 기술적 의미를 함께 파악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 단계에서 청구항 구성요소 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분석표에는 각 구성요소의 문언, 기술적 의미, 명세서 대응 부분, 도면 대응 부분, 필수 구성 여부 및 다른 구성과의 결합관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5.2 제2단계: 선행기술의 확정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다. 선행기술은 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 문구나 일부 도면만을 분리하여 선행기술의 내용을 과도하게 확장하여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이 단계에서 선행문헌별 기술적 과제, 핵심 구성, 작동 방식, 효과, 한계 및 출원 발명과의 관련성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선행기술을 출원 발명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5.3 제3단계: 공통점과 차이점의 구체적 특정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을 구성 요소별로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

적으로 특정한다. 차이점은 추상적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이 단계에서 청구항-선행기술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비표에는 각 청구항 구성 요소별로 선행기술의 대응 구성, 동일 여부, 차이 여부, 차이의 기술적 의미, 효과 차이 및 판단상 쟁점이 표시되어야 한다.

5.4 제4단계: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여부 판단

선행기술에 차이 구성이 직접 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직접 개시가 없다면, 선행기술에 그 차이 구성을 채택할 암시가 있는지 또는 출원 당시 기술 상식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인공지능은 이 단계에서 단순한 기능 유사성과 구체적 구성 개시를 구별하여야 한다. 기능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차이 구성이 개시 또는 시사되었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평가서는 차이 구성을 채택할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5.5 제5단계: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 판단

둘 이상의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그 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결합 동기는 선행문헌 자체의 시사 또는 암시, 해결하려는 과제의 공통성, 구성요소의 기능·작용의 공통성, 기술 분야의 밀접한 관련성, 출원 당시 기술 발전의 방향, 업계의 명확한 요구, 결합 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공 기대, 결합에 따른 기술적 장애 또는 부정적 교시의 존재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 단계에서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이유를 항목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복수 문헌에 각각 일부 구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합 동기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평가서는 결합 동기 있음, 결합 동기 불명확, 결합 동기 없음, 기술적 장애 있음 등으로 판단 근거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6 제6단계: 작용 효과의 예측 가능성 판단

차이 구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작용 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예측 가능한지 판단한다. 공지된 구성들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작용 관계가 발생하거나, 기존 기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 단계에서 출원 발명의 효과와 선행기술의 효과를 구분하고, 차이 구성으로 인한 효과가 단순한 예상 효과인지, 새로운 작용 관계인지, 기존 문제의 해결인지, 예측 곤란한 효과인지 평가하여야 한다.

5.7 제7단계: 사후적 고찰 여부 점검

마지막으로 판단 과정이 출원 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끼워 맞춘 사후적 고찰인지 점검하여야 한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 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결합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발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행기술과 기술 상식만으로 그 차이 구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은 이 단계에서 판단 경로를 검증 로그로 남겨야 한다. 어떤 선행기술을 어떤 이유로 선택하였는지, 어떤 차이 구성을 어떻게 도출하였는지, 결합 동기가 출원 발명 인식 이전에도 존재하였는지, 효과를 사후적으로 경시한 것은 아닌지 표시하여야 한다.

6. 진보성 판단에서 피해야 할 오류와 인공지능의 오류통제 기능

6.1 청구항의 상위개념화 오류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넓은 개념으로 바꾸어 선행기술과 대비하면 안 된다. 이는 선행기술에 실제로 없는 구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해친다.

인공지능은 청구항 문언과 선행기술 대응 구성을 직접 대비하여, 판단자가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6.2 선행기술 끼워서 맞추기 오류

선행기술 A에는 구성 1이 있고, 선행기술 B에는 구성 2가 있으며, 선행기술 C에는 구성 3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출원 발명이 쉽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구성들을 왜 결합할 것인지, 결합하면 청구항 발명의 전체 구성이 실제로 되는지, 결합 과정에 기술적 장애는 없는지, 결합 결과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경로를 명시하고, 결합 동기, 결합 가능성, 결합 후 구성의 완성 여부 및 기술적 장애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6.3 효과의 사후적 경시

출원 발명의 효과를 발명을 알고 난 뒤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효과의 예측 가능성은 출원 당시 선행기술과 기술 상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은 출원 발명의 효과가 선행기술로부터 직접 예측 가능한지, 차이 구성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효과인지,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인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4 청구항 일부 구성의 생략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무시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해서는 안 된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전체의 구성과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별 구성요소가 공지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결합의 곤란성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대비표에 포함되었는지 점검하고, 누락된 구성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별도 오류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평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

인공지능 기반 특허 진보성 평가는 신뢰성 있는 보조 평가자료로 기능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평가대상 청구항이 특정되어야 한다. 평가서에는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평가대상 청구항 번호 및 평가 범위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둘째, 입력자료가 표시되어야 한다. 평가에 사용된 청구항, 명세서, 도면, 선행기술 문헌, 거절이유통지서, 의견서, 보정서, 심사관 인용 문헌, 판례 및 심사기준 자료가 목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청구항 구성요소 분석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가 문언, 기능, 배치, 연결 관계, 작용순서 및 기술적 의미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넷째, 선행기술은 문헌 전체 기준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일부 문구나 일부 도면만을 분리하여 선행기술을 과도하게 확장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청구항과 선행기술의 대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구성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차이 구성의 개시 또는 시사 여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능이나 결과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차이 구성이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일곱째,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가 검토되어야 한다. 복수 문헌에 일부 구성이 흩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문헌들을 결합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여덟째, 작용효과의 예측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차이 구성으로 인한 효과가 출원 당시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작용관계 또는 문제 해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아홉째, 사후적 고찰 여부가 점검되어야 한다. 출원 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사후적으로 결합한 판단인지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열째, 검증 로그가 작성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어떤 자료를 사용하였고, 어

면 기준으로 청구항을 해석하였으며, 어떤 근거로 차이점과 결합 동기 및 작용효과를 판단하였는지가 기록되어야 한다.

열한째, 평가의 한계가 표시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평가는 최종 법률판단이 아니라 보조 평가자료이며, 선행기술자료 부족, 청구항 불명확성, 명세서 기재 부족 또는 자료 누락이 있는 경우 그 한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8. 표준 의견서 문구

진보성 의견서에서는 다음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발명과 선행기술 사이에 일부 유사한 구성 또는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보성 판단은 먼저 청구항 발명을 정확히 확정하고,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차이 구성이 선행기술에 게시 또는 시사되어 있는지, 복수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 작용 효과가 쉽게 예측 가능한지, 판단 과정이 사후적 고찰에 해당하는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단순한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복수 자료의 분류, 구성 요소별 대비, 차이점 특정, 결합 동기 분석, 작용효과 검토 및 사후적 고찰 점검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청구항과 선행기술을 항목별로 분해하고, 판단 근거와 오류 가능성을 검증 로그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일관성 및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보조 평가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평가는 특허청 또는 법원의 최종 법률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객관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돕는 구조화된 보조 평가입니다.

따라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체적 차이 구성을 상위개념으로 일반화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거나, 복수의 선행기술을 출원 발명에 맞추어 사후적으로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9. 결론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비슷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다.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구항에 기재된 구체적 차이 구성이 선행기술에 게시 또는 시사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그 차이 구성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는가.”

따라서 청구항의 구체적 구성을 상위개념으로 확대 일반화하거나, 출원 발명을 알고 난 뒤 선행기술을 사후적으로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것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의 진보성 판단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 발명의 확정, 선행기술의 확정, 공통점과 차이점의 구체적 특징, 차이 구성의 게시 또는 시사 여부,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 작용 효과의 예측 가능성 및 사후적 고찰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구조적 판단이다.

이 구조적 판단은 복수 자료의 분류, 구성 요소별 대비, 판단 오류의 점검 및 검증 로그 작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기반 평가는 특허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보조 평가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인공지능 평가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의 최종 법률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판단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조화된 보조 평가자료로 기능하여야 한다.

결국 인공지능이 특허 진보성 판단을 평가해야 하는 당위성은 인공지능 자체의 권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진보성 판단이 본질적으로 청구항 해석, 선행기술 대비, 차이점 특징, 결합 동기 판단, 작용 효과 검토, 사후적 고찰 점검 및 오류통제를 요구하는 구조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